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 변경안내

'21.6월 까지 소득 지급분	'21.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종전 →	변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4, 7, 10월 말일까지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 7월 말일까지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 7월 말일까지	종전과 동일

명칭 변경안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비용(인건비) 지출 증빙 및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활용됩니다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 '21년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 6월까지 소득 지급분은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 : '21년 2분기(4 ~ 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월 제출로 왜 바뀌었나요?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가산세 (법인세법§75의7①, 소득세법 §81의11①)

- '21년 7월 지급분부터 미제출·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0.125%)

※ '21년 6월까지 지급분에 대한 가산세율은 종전과 같음
(미제출·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일용근로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 고용기간이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인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

상용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일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x 6%] − (산출세액 x 55%)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금액 : 1일 15만원

계산사례

일용근로자를 7일동안 고용하고 일급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 비과세소득 :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 산출세액 : (200,000원 − 150,000원) x 6% = 3,000원
  - 소 득 세 : (3,000원 − 3,000원 x 55%) = 1,350원
    산출세액 *세액공제*

→ 원천징수 할 소득세는 7일의 합계액 9,450원(1,350원 x 7일)입니다.

참 고

간편법 : (200,000원 − 150,000원) x 2.7% = 1,350원
6%X(1−55%)

→ 1,350원 x 7일 = 9,450원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164조의3)

*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제출기한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 '21년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 6월까지 소득 지급분은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 : '21년 상반기(1 ~ 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종전과 동일)

예시 : 상반기 지급분 ⇨ **'21년 8월 2일**까지
하반기 지급분 ⇨ **'22년 2월 3일**까지

제출내용

사업소득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월, 지급액, 세액 등

근로소득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로기간, 급여 등

가산세 (법인세법§75의7①, 소득세법 §81의11①)

사업소득 : 미제출·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0.125%)

근로소득 : 미제출·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0.125%)

매월 제출해야 하는 대상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대로 반기별로 제출합니다.(연 2회, 1월 말·7월 말)

Q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가요?

A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소득자의 업종코드 중 '기타자영업(940909)'은 어떤 경우에 선택하나요?

A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자의 35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에 분류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적습니다.
(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검침원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제14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2.3.10.)

Q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21년 12월 근로·사업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작성합니다.

예시) '21년 12월분 근로·사업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2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합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자의 업종코드 분리·신설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 확대대상 직종과 연계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분리·신설되었습니다.

방판·외판 (940908)	분리신설 →	방문판매원 (940908)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기타 모집수당 (940911)	분리신설 →	기타모집수당 (940911)
		대출모집인 (940923)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신 설		방과후강사 (940925)

'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달라지는 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법 §164)

종 전	변 경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4·7·10월) 말일	지급일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매월 제출)

가산세율 인하 (법인세법 §75의7①, 소득세법 §81의11①)

구 분	종 전	변 경
미제출·불성실	1%	0.25%
지연제출	0.5%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0.125% (제출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구 분	종 전	변 경
명 칭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반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7월) 말일	매월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 처리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 대상이 아님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하여 제출
지연제출 가산세	0.125%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0.125% (제출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